

# 학생상담센터규정

제 정 1999. 3.  
개 정 2012. 7.  
개 정 2020. 4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이 기구는 우송대학교 학생상담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.(신설 2020.04.13.)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설치된 센터의 기능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04.13.)

**제3조(기능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20.04.13.)

1.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진로개발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
2.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 및 심리평가
3. 위기 대응 상담 및 관련 매뉴얼 개발
4. 학생들의 자아성장, 인성개발 및 진로관련 프로그램 개발
5. 학사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의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
6. 양성평등성상담실 운영
7. 그 밖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대·내외 사업 등

## 제2장 조직

**제4조(구성)** 센터는 센터장, 부센터장, 상담교수, 전문 상담원, 행정조교로 구성할 수 있다.(개정 2020.04.13.)

**제5조(센터장)**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,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신설 2020.04.13.)

## 제3장 운영위원회 등

**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)**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'위원회'라 칭한다)를 둔다.(개정 2020.04.13.)

**제7조(위원회 구성)**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, 부위원장은 부센터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상담관련 전공교수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.(개정 2020.04.13.)

**제8조(위원회 회의)**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신설 2020.04.13.)

**제9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(개정 2020.04.13.)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중요안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